

# 조례개정을 통해 외투기업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추진부서 | 경기도 세정과 ☎ 031-8008-4153

## 개선배경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조례감면을 통해 최대 15년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감면기간을 7년으로 제한하는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저 수준의 감면만을 허용하고 있음

※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12개 시도의 경우는 조례를 통해 최대 허용치 적용

- 경기도의 제한적 세제지원은 타지역 대비 불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키는 장애요인으로 작용, 자발적 역차별을 초래함

- 연도별 외국인투자기업 신규등록 현황을 볼 때, 경기도는 경제 규모 및 인구수 등 외형에 비해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 연도별 외국인투자기업 신규등록 현황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전국	902개 (100%)	955개 (100%)	842개 (100%)	1,342개 (100%)	1,680개 (100%)
경기도	182개 (20.2%)	196개 (20.5%)	158개 (18.8%)	251개 (18.7%)	312개 (18.6%)
서울	472개 (52.3%)	498개 (52.1%)	464개 (55.1%)	664개 (49.5%)	790개 (47.0%)
인천	65개 (7.2%)	97개 (10.2%)	83개 (9.9%)	231개 (17.2%)	324개 (19.3%)

※ 서울시 쏠림현상 지속, 인천시의 비중은 지속 증가

## 개선내용



-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
  - 감면대상 :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 주요 개정내용 〉

구분	개선 전	개 선 후
신규 취득 사업용 부동산	사업개시 후 7년 이내 : 100% 감면	사업개시 후 15년 이내 : 100% 감면
	그 다음 3년 이내 : 50% 감면	
사업양수 사업용 부동산	사업개시 후 5년 이내 : 50% 감면	사업개시 후 7년 이내 : 50% 감면
	그 다음 3년 이내 : 30% 감면	현행 유지
	사업개시 전 취득 : 50% 감면	현행 유지

※ 고용창출 등 경제효과를 고려하여 신규 취득과 사업양수 취득에 대한 감면을 차등 적용

추진과정



'23. 2. 7. 경기도지사 국내외 투자유치 확대 정책 목표 제시

'23. 3.16.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내부 검토회의 및 경기도의회 협의 \*

\* 신속한 조례개정을 위해 의원입법발의 추진

'23. 3.21. 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개정안 마련

'23. 4.27.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 안건 상정 및 의결

'23. 5.17. 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

개선효과



-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통해 기술을 수반한 첨단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선진기술 도입 및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원 달성을 지원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경기도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에 기여함

경기도, 외투기업 부동산 취득세 전액 감면 15년으로 확대



경기도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도세 감면 개정 조례'를 오는 17일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투기업이 사업을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 감면 허용 기간이 7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또 외투기업이 기존 사업자로부터 공장이나 설비 등을 인수(사업양수)하면 7년까지 취득세를 전액 감면합니다.

기존에는 5년까지였습니다.

8년부터 10년까지는 취득세를 30% 감면해줍니다.

경기도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김동연 지사의 '임기 내 100조원의 국내외 투자유치'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보하기  
카카오톡 : KBS세보' 검색  
전화 : 02-781-1234  
이메일 : kbs1234@kbs.co.kr  
뉴스룸페이지 : https://goo.gl/4bWbkg